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일부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용어 정비 등 필요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안 제4조의5 및 안 별지 제9호서식)
- 나. 1일 주차권 미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및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요금에 대해 5급지 기준 요금으로 적용토록 개정(안 제12조)
- 다.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1조의3)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현행화(안 제22조)
- 마. 월정기권 발급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행정부 명칭 및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적용대상자 현행화(안 별표 1)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8. 31.~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일부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용어 정비 등 필요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결과

-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시정 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서울시 협조 요청 등으로 우리 구 또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이용대상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 공영주차장이 무인화로 전환되어 1일 주차권 제도가 미운영됨에 따라 1일 주차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 요금에 관한 조문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의2)

-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5년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6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 검토결과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및 본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